

2022 청년기업-청년잇기 YES!매칭사업 청년기업 모집 공고문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에게 4차 산업 및 미래 新산업 분야의 다양한 일경험 제공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일자리로 연계 가능한 「2022년 청년기업-청년잇기 YES!매칭사업」에 참여할 지역혁신형 청년기업을 모집하오니 잠재력 있는 청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2 청년기업-청년잇기 YES!매칭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사업대상 : 대구소재 청년기업(청년이 대표이거나 직원의 1/2이상인 청년으로 구성)
대구거주 혹은 전입예정인 만19세~만39세의 미취업청년 40명
- 사업내용 : 청년이 일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기업을 발굴
일경험청년 매칭을 통해 일경험기간 동안 인건비 80% 등 지원
* 총 일경험 기간 : 24개월 ('22. 4~12월)/('23. 1~12월)/('24. 1~3월)
- 주최 : 행정안전부/대구광역시
- 주관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 2월 3일(목)
- 모집대상 : 대구에 소재지를 둔 상근인력이 2인 이상 근무하는 만19세~만39세의 청년이 대표인 기업 또는 청년 상근직원이 전 직원의 1/2 이상인 기업
- 모집분야
 - 4차 산업 및 미래 新산업 기술과 일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직무
(예: 온라인플랫폼 구축, IT기술 활용 등)
 - 기존 산업으로 지역 특화 분야에서 지역 혁신 기업의 직무
(예: 온라인콘텐츠 제작·관리,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
- ※ **직무제한**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등의 직무는 제외
- ※ **업종제한** : 소비향락, 요식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체(보험, 제약회사 등) 등 사회적기업 제외(신청일 기준/단, 예비사회적기업 가능)
- 신청요건

청년기업 신청 요건

- 일경험 청년에게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담인력 1인 이상 확보 및 유지
 - > 자리를 비울 시 대신하여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체 인력 있어야 함
- 일경험 청년이 24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함(책상, 컴퓨터 등)
- 일경험 청년의 인건비 400,000원은 기업 자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함
-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업으로 일경험청년도 근무기간(24개월) 동안 4대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유의사항

청년기업 신청시 유의사항

- 기업에 고용이력이 있거나, 경영진들과 친족관계(직계존비속)인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대표제외 상근 근로자 2명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일경험청년 모임, 청년기업 간담회 등 협조사항에 불응할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전용통장을 통하여 청년 인건비 지급하여야 함
- 일경험기간 중 해당 청년이 다른지원 사업에 응하여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 위해 YES!매칭 사업을 포기/이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건비 환수할 수 있음
- 타사업과의 중복(해당 청년의 인건비)참여 불가
- 매칭기업(청년)의 중도 포기 등으로 추가 선정되는 참여기업(청년)에게는 기존 참여자의 잔여기간에 한해 지원

○ 제외대상

※ 참여 제외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대표 및 임원)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기업과 같은 경우
 -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대표 및 임원)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기업 (대표자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기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 *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 기준 : 붙임 참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불문)가 2회 이상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 사회적기업 제외 (신청일 기준/단, 예비사회적기업 가능)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칭지원 : 1개 기업당 1~2명의 청년을 매칭(청년 T/O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면접진행은 기업별 별도진행 (3/14~16, 일정 변동시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인건비 지원 : 2022년 4월 ~ 2024년 3월(24개월) 간 청년임금(세전 2,000,000원 기준)
80%(최대 1,600,000원) 지원

예시) (매월)청년센터 → 청년기업에게 청년임금 1,600,000원 지급

(매월)청년기업 → 일경험 청년에게 2,000,000원 지급 (자부담 400,000원 포함)

※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기타 부담금은 기업 자부담

- 교육 지원 : 청년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10시간)& 심화교육(10시간) 지원

○ 업무 내용

- 4차 산업기술과 미래 新산업 분야와 결합한 직무 (온라인플랫폼 구축, IT기술 활용 등)
- 기존 산업의 경우, 지역 특화 분야로서 지역 혁신 기업의 직무
(온라인콘텐츠 제작·관리,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

- 기본 근로사항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기업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단,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2월 3일(목)
- 접수방법 : [점프사이트\(dgjump.com\)](http://dgjump.com) 회원가입 -> 청년기업 등록 신청 클릭
-> 정보입력 후 승인요청 클릭
- 제출서류 : 2022년 YES!매칭 기업 지원서(점프 내 양식 제공) 작성
[첨부분서] 사업자등록증 1부, 4대보험가입자 명부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기타 추가 증빙 서류 1부, 사무실 사진
참여기업 확인서 1부,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등 (스캔본 이미지 첨부)
- 문 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상생사업팀 (☎ 053-426-1939)

5. 청년기업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월 7일(월) 정량/정성심사로 종합 평가하여 60개 기업 1차 선정
- 서류심사 지표

심사지표		심사내용	선정기준
정성 평가	직무설정 및 참여 의지	사업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속 고용 의지 여부	정량/정성적 평가로 종합 평가심사 실시
		고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설정 명확도	
		관련 직무가 본 사업의 취지와 적합한지 여부	
정량 평가	대구소재 청년기업	청년이 직원의 1/2이상이거나 대표가 청년인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에 위치하는가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자 수 확인	
	요건적합 여부	근무환경 세팅 및 구비 상태 확인(책상, 의자, PC 등)	
		구비 서류의 미비 또는 적합성 여부	
		기타 부적격 사유 : 예) 참여 제외 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등	

- 1차 서류심사 통과 공지 : 2월 8일(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점프 등록 : 2월 8일(화) ~ 2월 9일(수)_2일간
서류심사에 통과한 60개 기업의 정보를 청년커뮤니티 포털 “점프”에 최종 공개
→ 청년모집 접수시 기업 정보 탐색 창구로 활용
→ 신청 시 작성한 정보를 토대로 최종 등록

6.

(사전 필독) 추후 진행 내용 및 준수 사항

*아래사항이 모두 가능할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정보 등록 확인 및 수정(필요시) : [점프\(www.dgjump.com\)](http://www.dgjump.com) 에 2월 9일까지 완료
- 청년 모집기간: 2월 9일~ 3월 4일
 - 전화안내: 기업 탐색을 위한 청년방문 및 전화면담 요청시 친절 응대 요망
 - 잇기박람회 개최: 3월 3일(목) 지원청년들의 기업 정보 탐색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 참여기업 필수참여
- 청년 매칭 과정: 일정은 확정이며, 변경 불가하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면접관련 공지사항 전달 (3/10~3/11)
 - 청년센터로 접수된 청년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기업에 사전 검토 자료로 전달
 - 기업별로 확정된 청년 T/O 통보
 - 청년센터에서 기업-청년 간 면접일시 및 장소안내 공지
 - 공지사항 확인후, 면접심사 진행: 3.14(월) ~ 16일(수)
 - 청년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대면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매칭 확정
 - 청년과 기업에 최종 매칭결과 통보 및 공지 (3/21)
 - ※ 해당기업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업 의사에 따라 추가 매칭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31)
 해당기업 또는 해당직무에 지원하는 청년이 없을 경우에는 매칭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면접진행 후 적격 청년이 없을 경우 매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지원 없음)
- 성장 프로그램 참여 : 4월~12월 (9개월간)
 -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기업에 직접 방문) : 4월 중 일정조율 후 방문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훈련지원 협조 : 업무시간내 교육이수 (상세과정 추후안내)
 - 기업 간담회 및 교육 필수 참여 / 현장 모니터링 진행 시 협조
 - 일경험청년의 모임 및 교육 참여 협조 : 연 2회 이상 (총 20시간 이상)
 - 청년과 기업 9개월 간의 중간공유회 진행 (11월 중)
- 청년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 매칭 청년과의 근로계약 체결 내용 준수
 - 인건비 지원을 위한 통장 및 지출내역 증빙서류 준수
 - 청년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7. 기타사항

- 참여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업 중 희망하는 청년참가자가 없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선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미준수, 청년센터와의 업무제휴약정 미이행 시 지원금은 환수조치됩니다.
 - 공고문의 해석이 다를 경우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해석에 따릅니다.
- 2021년 주요변경 사항(변경사항이 많으므로, 확인 후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구 분	2021년	2022년
일경험 기간 확대	4월~11월(8개월)	9개월 (‘22. 4 ~ 12월) *총 일경험 기간 : 24개월(‘22. 4월 ~‘24. 3월)
청년인건비 지원금 증액	월 1,600,000원*8개월=12,800,000원 [월급여(2,000,000원)의 80%지원]	월1,600,000원* 24개월=38,400,000원 *세전 월급여(2,000,000원 기준) 80%지원(최대 1,600,000원)
청년기업 직무분야 확대	디지털·비대면 기술과 일경험·직무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분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화분야 및 4차 산업 등 미래 新산업 분야
청년기업 등록요건 완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점프 등록	1차 서류심사 2차 요건 충족 기업 점프 등록
청년기업 정보탐색 확대	청년 모집 접수시, 희망 직무에 대한 기업 정보 탐색을 온라인(점프)으로만 탐색	희망 직무에 대한 기업 정보 탐색 강화 1차 기업 정보 온라인 탐색 (점프) 2차 잇기박람회 를 통한 이중 심화 탐색
근속장려금 지원	해당 없음	장기간 일경험 근무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일경험 청년 근속장려금(150만원) 지원 *8개월 근속근무 시 지급

【붙임】

인위적 감원 기준

1.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 23(중분류) - 세분류의 ①,②, ③,⑤,⑥,⑨에 해당하는 하는 감원을 의미한다.
2.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그룹내 계열시간·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